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년월일	2004. 5. . (제회)	

##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제출년월일	2004. 5. .

법제처심사필

## 1. 의결주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위험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6896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위험물을 질산염류·석유류 등으로 정하고,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기준이 되는 지정 수량을 정함(안 제2조·제3조 및 별표 1).

나. 위험물 저장소를 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 등으로 구분하고, 위험물 취급소를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및 일반취급소로 구분함(안 제4조·제5조·별표 2 및 별표 3).

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를 하도록 함(안 제6조 제2항).

- 라.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검사내용에 따라 기초·지반검사, 충수(充水)·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 제2항 및 별표 4).
- 마. 인화성액체인 석유류·알코올류 등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등이 있는 사업소로서 위험물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사업소는 자체소방대를 편성하도록 함(안 제18조).

#### 4. 주요토의과제

없음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국방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및 건설교통부와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03. 12. 29 ~ 2004. 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 견 없음

- 규제강화 : 5건

- 규제완화 : 2건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사항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3.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저장소가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인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에 대한 기술검토를 받은 결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행

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공사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에 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검토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보완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 법 제8조제1항 전

단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 · 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 · 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 라.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수압시험에 한한다)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시가 있는 탱크
3. 용접부검사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①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수압검사로 한다.

②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공사로부터 충수·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당해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필증”이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탱크시험필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충수·수압검사를 면제한다.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완공검사필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당해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재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 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

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

에 의한 특별소방대상물의 난방·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  
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  
소가 당해 특별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③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 제2항제2호의 경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별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  
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①법  
제15조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  
과 같다.

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3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3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제외 한다.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  
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②법 제15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 1. 제조소

### 2. 이송취급소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  
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보일러 · 벼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  
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는 일반취급소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은 별표 6과 같다.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②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나.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는 일반취급소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

## 소 ·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 제 4 장 자체소방대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②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지정수량의 3천배를 말한다.

③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 제 5 장 위험물의 운송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 제 6 장 보 칙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제21조(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도에 있는 2 이상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9.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 · 반려 및 변경명령  
제22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 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 나. 암반탱크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액체

### 위험물탱크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을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3.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
  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운반용기검사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중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안전교육 중 제20조제1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별표 5의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및 위험물운송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포함한다)은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 제23조(과태료 부과) ①법 제39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제조소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제조소등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		이 영에 의한 제조소등
주유취급소		주유취급소
석유판매 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 크저장시설이 없는 것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 또는 옥내탱	저장소 또는 일반

	크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것	취급소
특수위험물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이 없는 것	판매취급소
	지하탱크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있는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이송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것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하지 아니하는 것	일반취급소
저장취급소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이 없거나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저장소
	위험물을 옮겨 담기 위한 시설에서 1일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 이상인 것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시설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시설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시설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시설		이동탱크저장소
선박탱크저장시설		옥외탱크저장소
지하암반저장시설		암반탱크저장소

제3조(종전에 설치된 암반탱크저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5485호 소방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에 설치된

별표 2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암반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당해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2004년 12월 31일까지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반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당해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신종 위험물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위험물 중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에 의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6조 및 이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완공검사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소방법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및 저장취급소”를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 및 주유취급소”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유별	성질	위험물	지정수량
		품명	
제1류	산화성 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간산염류	1,000킬로그램
		9. 중크롬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50킬로그램,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제2류	가연성 고체	1. 황화린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유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9. 인화성고체	1,000킬로그램
제3류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류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1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제4류	인화성 액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수용성액체	200리터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수용성액체	1,000리터 2,000리터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수용성액체	2,000리터 4,000리터
		6. 제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제5류	자기 반응성 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킬로그램	
		2.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3. 니트로화합물	200킬로그램	
		4. 니트로소화합물	200킬로그램	
		5. 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6. 디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7. 히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8. 히드록실아민	100킬로그램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제6류	산화성 액체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3. 질산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300킬로그램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 ※ 비 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를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 · 알칼리토류금속 ·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 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 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 나. 직경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린 · 적린 · 유황 및 철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는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페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다. 과산화지크릴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라. 1·4비스(2-터셔리부틸페옥시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 마. 시크로헥사놀페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가목의 1에 의한다.
-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동 표에 의한 위험물의 판정 또는 지정수량의 결정에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또는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할 수 있다.

[별표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제4조관련)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1. 옥내(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저장(위험물을 저장하는 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장소. 다만, 제3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옥내저장소
2. 옥외에 있는 탱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간이탱크저장소
6.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앞차축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피견인자동차의 일부가 견인자동차에 적재되고 당해 피견인자동차와 그 적재물의 중량의 상당부분이 견인자동차에 의하여 지탱되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이동탱크저장소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만, 제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알코올류 · 제2석유류 · 제3석유류 ·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다. 제6류 위험물 라. 별표 1의 제2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및 제6류 위험물 중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옥외저장소
8.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암반탱크저장소

[별표 3]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p>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채우거나 차량에 고정된 3천리터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주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포함한다)</p>	주유취급소
<p>2.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p>	판매취급소
<p>3.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p> <p>가.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p> <p>나.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 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p> <p>다.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p> <p>라.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p> <p>마.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의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p>	이송취급소

바.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다목 내지 마목 의 규정에 의한 경우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장소(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 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 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일반취급소

[별표 4]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구 분	검사내용
1. 기초 · 지반검사	가.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중 나목 외의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당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2. 충수 · 수압검사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3. 용접부검사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4. 암반탱크검사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 제1항 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類)의 위험물
3. 소방공무원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 조 소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저 장 소	1. 옥내저장소 또는 지하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 또는 간이탱크저장소	
	3. 옥외저장소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4. 옥외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	
	5.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및 옥외저장소와 암반탱크저장소	
취 급 소	1. 주유취급소 및 판매취급소(판매취급소의 경우에는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2.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일반취급소(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워 넣는 것	

<p>3.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취급소(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에 한한다)</p>	
<p>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p>	
<p>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와 이송취급소</p>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 비 고 : 원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관련)

1. 기술능력

가. 필수인력

- (1) 위험물관리기능장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1인 이상
- (2) 비파괴검사기술사 1인 이상 또는 방사선투과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비파괴검사 · 자기탐상비파괴검사 및 침투탐상비파괴검사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1인 이상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1) 누설비파괴검사의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2) 금속분야의 비파괴검사기능사 및 토목분야의 측량 · 지형공간정보 관련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시 설 : 바닥면적이  $33m^2$  이상인 전용사무실

3. 장 비

가. 방사선투과시험기, 초음파탐상시험기,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나. 기밀시험장비(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 · 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다. 수직 · 수평도 측정기(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 제3항 관련)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 비 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제23조 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기준액의 3분의 2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1호	
(1) 승인기한(임시 저장 또는 취급 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		50
(2) 승인기한(임시 저장 또는 취급 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		100
(3)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00
나.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2호	
(1) 1차 위반시		50
(2) 2차 위반시		100
(3) 3차 이상 위반시		200

다.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3호	
(1)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50
(2) 신고기한(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100
(3) 허위로 신고한 자		2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0
라.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4호	
(1)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50
(2) 신고기한(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100
(3) 허위로 신고한 자		2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0
마.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5호	
(1)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50
(2)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100
(3) 허위로 신고한 자		2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0

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의 선임신고 · 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 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선임 · 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 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 신고기한(선임 · 해임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 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5호	50 100 200 200
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 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로 한 자 (1)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 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한(변경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 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3) 허위로 신고한 자 (4)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6호	50 100 200 200
아.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 과를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7호	100
자.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 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1) 1차 위반시 (2) 2차 위반시 (3) 3차 이상 위반시	법 제39조제 1항제8호	50 100 200

차.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 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9호	50
카.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 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 1항제9호	
(1) 1차 위반시		50
(2) 2차 위반시		100
(3) 3차 이상 위반시		200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소방국 예방과	
연 락 처	(02) 3703 - 5336